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재부품장비협력관 및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국내대책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11월 19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1조의4를 삭제한다.

제51조의5제1항 중 “2021년 11월 19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제4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3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51조의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상국내정책관 및 통상국내정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관이 된다”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로 한다.

[별표 6]

산업통상자원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49조제4항, 제51조제7항, 제51조의2제4항, 제51조의3제4항, 제51조의5
제4항 및 제51조의6제4항 관련)

1.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존속기한: 2022년 7월 10일)

총계	3
일반직 계	3
3급 또는 4급 이하	3

2. 신통상질서전략실(존속기한: 2022년 3월 31일)

총계	21
일반직 계	21
고위공무원단	3
3급 또는 4급 이하	18

3. 소재부품장비협력관(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4.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8
일반직 계	8
4급 이하	8

5. 국내대책과(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4급 이하	1

6. 미래자동차산업과(존속기한: 2023년 10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4급 이하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의2(소재부품장비협력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에 따라 <u>2021년 12월 31일까지</u>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재부 품장비협력관 1명을 둔다. ② ~ ④ (생 략)	제51조의2(소재부품장비협력관) ① ----- ----- ----- ----- <u>2022년 12월 31일</u> ----- ----- -----.
제51조의3(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 과) 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 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 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u>2021년 12월 31일까지</u> 존 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재부품 장비시장지원과를 둔다. ② ~ ⑤ (생 략)	제51조의3(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 과) ① ----- ----- ----- --- <u>2022년 12월 31일</u> ----- ----- -----.
제51조의4(통상국내정책관) ① 산 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밑 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u>2021년 11월 19일까지</u> 존속하는 <u>한시조직으로 통상국내정책관</u> <u>1명을 둔다.</u> ② 통상국내정책관은 고위공무	<삭 제>

<u>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보한다.</u> <u>③ 통상국내정책관은 제18조제 3항제34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 에 관하여 무역투자실장을 보좌 한다.</u> <u>④ 통상국내정책관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u> 제51조의5(국내대책과) ① 산업통 상자원부 무역투자실에 「행정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 칙」 제17조의3에 따라 <u>2021년 11월 19일까지</u> 존속하는 한시조 직으로 국내대책과를 둔다. ② ~ ④ (생략) 제52조(한시정원) ① 삭제 ②·③ (생략) ④ 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1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 부에 둔다. ⑤·⑥ (생략)	제51조의5(국내대책과) ① ----- ----- ----- ----- <u>2022년</u> <u>12월 31일</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한시정원)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2022년 12월 31일</u>----- ----- -----. ⑤·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50